

## STM (Smart Teller Machine) 이용약관

### 제 1 조 목적

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Smart Teller Machine(이하 “STM”이라 합니다)을 이용하는 고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합니다)간에 STM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# 제 2 조 용어의 정의

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1. “STM(Smart Teller Machine)”이라 함은 화상인증(신분증 복사 및 얼굴사진 촬영, 음성녹음) 및 바이오 인증이 가능하며 ATM업무 및 은행의 영업점 창구에서 수행하는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지능형 자동화기기를 말합니다.
  2. “ATM(Automatic Teller Machine)”이라 함은 카드, 통장, 바이오 인증 등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현금자동화기기를 말합니다.
  3. “바이오 정보”라 함은 지문·얼굴·홍채·정맥·음성·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,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합니다.
  4. “바이오 인증”이라 함은 개인의 고유한 “바이오 정보”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 제 3 조 STM 이용방법

- ① 이용자는 STM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약관을 확인 및 동의하고 본인 확인 등 STM 이용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, 은행은 이를 접수하여 STM 이용을 승인합니다.
- ② 은행이 STM을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는 각종 조회, 현금 입출금, 계좌이체, 계좌신규, 제사고신고, 전자금융 거래 등이며, 구체적인 업무 종류는 은행의 홈페이지 및 ST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③ ATM에서 제공하는 각종 업무는 제1항의 신청절차 없이 STM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
### 제 4 조 본인 확인 방법

- ① 은행은 이용자가 STM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, 다음 각 호의 한가지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가 완료되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업무를 제공합니다. 단, 제3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접근매체(통장, 카드 등) 및 접근매체의 비밀번호 검증으로 ST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1. 화상인증 :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와 영상통화(실명확인증표와 얼굴 대조)  
단, 실명확인증표와 영상통화의 얼굴 대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위협이나 강압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 본인 확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## 2. 바이오 인증

가.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와 바이오 정보

나. 실명번호와 바이오 정보

- ② 제3조 제2항의 업무 종류에 대하여 각 업무별 본인확인 방법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며, 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## 제 5 조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의 선택

이용자는 제4조의 본인 확인 방법에 의해 본인 명의 계좌를 STM 출금계좌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STM 입금계좌는 이용자가 STM 이용시 입력하거나 선택한 계좌로 합니다.

## 제 6 조 입출금 및 계좌이체 한도

STM 이용시 1회 입출금한도(계좌이체 포함) 및 1일 입출금한도(계좌이체 포함)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르며, ATM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## 제 7 조 STM 수수료

- ①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은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하며, 이는 ATM과 동일합니다.
- ② 그 외 각종 업무의 수수료는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.
- ③ 수수료는 각종 업무 종료와 동시에 이용자가 선택한 계좌에서 출금됩니다.

## 제 8 조 예금계좌 신규 및 통장 재발행

-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계좌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완료된 경우 신규 개설 할 수 있으며, 적립식예금의 계좌는 이용자 본인 명의의 예금에서 신규할 자금을 출금하여 연동으로 신규 개설 할 수 있습니다.
- ② STM에서 신규 개설된 계좌는 인감 및 서명 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, 통장 발행을 원할 경우 이용자는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마친 후 재발행 할 수 있습니다.
- ③ STM에서 통장 재발행(이월 재발행 포함)시에는 인감 및 서명 확인을 생략하며, 영업점 창구거래시에는 직원에게 인감 및 서명 확인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. 또한, 이월 재발행은 통장 발행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
## 제 9 조 이용 가능 시간

- ① STM 이용 가능시간은 은행의 각 자동화코너별 이용 가능시간에 따르며,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무는 이용 가능 시간을 다르게 운영 할 수 있으며, 은행 사정 등으로 이용가능 시간이 변경 될 경우 은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하기로 합니다.

## 제 10 조 거래 내용의 확인

이용자는 STM 이용시 거래 지시와 처리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통신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## 제 11 조 STM 이용 제한

- ① 은행은 전쟁, 천재지변, 전산장애, 은행의 귀책사유 없는 정전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TM 이용을 일시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은 제5조의 계좌에 대한 법적 지급제한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STM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STM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12 조 약관의 변경

-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)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“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## 제 13 조 준거법 및 다른 약관과의 관계

- ① 이 약관은 해석·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.
- ② STM 이용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약관 및 내부규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-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,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, 「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」, 「하나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약관」, 각 상품별 약관, 기타 해당업무의 개별 약관, 은행의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며 기타 약관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규 및 규정을 적용합니다.

## 제 14 조 관할법원

STM 이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과 이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 부 칙

1. 이 약관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.